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5 선고 2018가단301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유한회사 A

2. B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8. 4. 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,369,863원 및 그 중 75,000,000원에 대하여 2017. 12. 15.부터 2018. 2. 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소장 최후 송달일 2018. 2. 1.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영풍

별지